

대통령령 제 호

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제2호 바목 금액란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하고, 같은 호 하목 금액란에 “600”을 “1,000”으로 한다.

다만,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과 관련된 사고(침해사고 보고는 제외한다.)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,000만원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